



# 2021년 시니어인턴십

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

## 참여 대상 자격 요건

참여기업	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<b>4대 보험 가입 사업장</b> 중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
참여자	<b>만 60세 이상인 자</b> (2021년 기준 1961년 생일이 지난 자)

## 지원 내용 및 수준

구분	지원 내용	
일반형 ↓	[ 1인당 최대 222만원 지원 ] 월 최대 37만원 한도 내, 최대 6개월	
	인턴지원금	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 (월 최대 37만원 한도 내)
	채용지원금	인턴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(월 최대 37만원 한도 내)
장기취업 유지형 일반형 진행 후 지원 가능	[ 1인당 총 90만원 지원 ]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,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(일시금) ※ 지원기준일(18개월 경과 시점)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	24개월 고용 시 1인 312만원 지원
세대통합형	[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] 채용지원금	
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		

## 신청 절차

신청 기간	2021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(예산 소진 시까지) (최대 <b>6개월</b>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<b>7월 1일</b> 이전에 사업신청 필요)
신청 방법	☎ 뒷면 하단 문의처(수행기관) 전화번호로 신청 → 참여신청서 제출 (근로자 근무시작일 전 협약서 및 신청서 제출 시 지원 가능)

※ **수행기관이란?**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정하여 참여기업 모집, 예산지원 등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



# 참여 제외 조건을 확인하세요!



## 참여 제외 조건(기업)

- ✓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
- ✓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,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
- ✓ 임금체불사업장, 인력파견업체 등
- ✓ 기타 인턴십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


## 참여 제외 조건(참여자)

- ✓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, 직계인척, 직계존비속, 혈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
- ✓ 근로자 일자리 사업 등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근로자
- ✓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근로자(일용직 근로자 제외)
- ✓ 동일인이 당해년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
- ✓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 하는 경우
- ✓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
- ✓ 인턴십 참여 시작일 또는 참여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자
- ✓ 자영업자(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준이며,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)



## 참여 제외 직종(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)

요양보호사 및 간병인, 경비원, 청소원, 경호원, 청원경찰, 기타 경호·보안 종사원, 시설·특수 경비원,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,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, 구두 미화원, 세탁원, 가사 도우미, 우편물 집배원, 성직자, 군인 등

**\* 해당 직종 외 자영업자, 파견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**

**문의처 :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02)6203-0960~2**